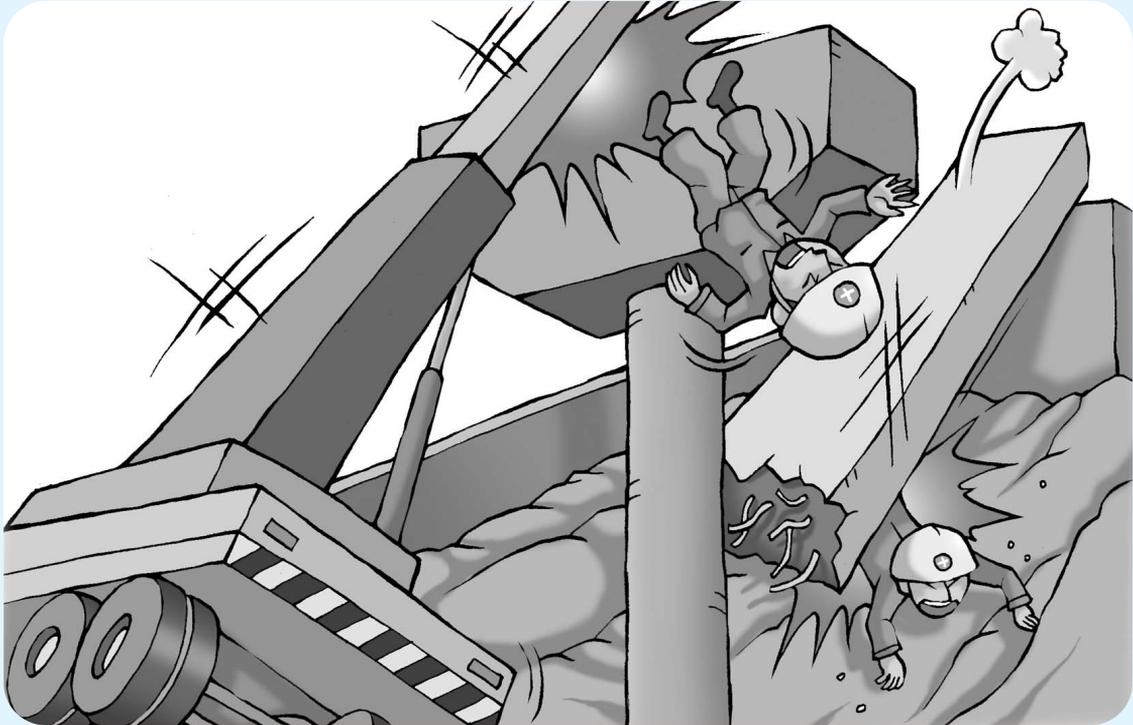


크레인 아웃트리거 파손으로 붐이 PSC빔에



1. 재해발생 경위

2005년 4월 ○일 17:45분경 강원도 삼척시 소재 ○○건설(주)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PSC빔을 교각 상부에 거치하던 중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가 파손되어 크레인 붐이 거치된 PSC빔에 충돌하여 크로스 빔 철근 용접중이던 피재자가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 용접부 파단
- 나. PSC 빔 거치후 가조립상태 미흡
- 다. 작업시작전 점검 미흡

3.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이동식 크레인 검사 철저

크레인 사용자는 자체 또는 정기검사시 주요 구조부위의 용접상태 등을 비파괴검사, 정밀육안검사를

통해 하중지지부의 안전성 확보

나. PSC빔 거치시 견고히 고정

PSC 빔은 전도위험이 높은 중량물 구조이므로 설계도서에 명기된 전도방지조치(전도방지철근, PC강연선 앵카, 전도방지 경사목 설치 등) 철저

다. 작업시작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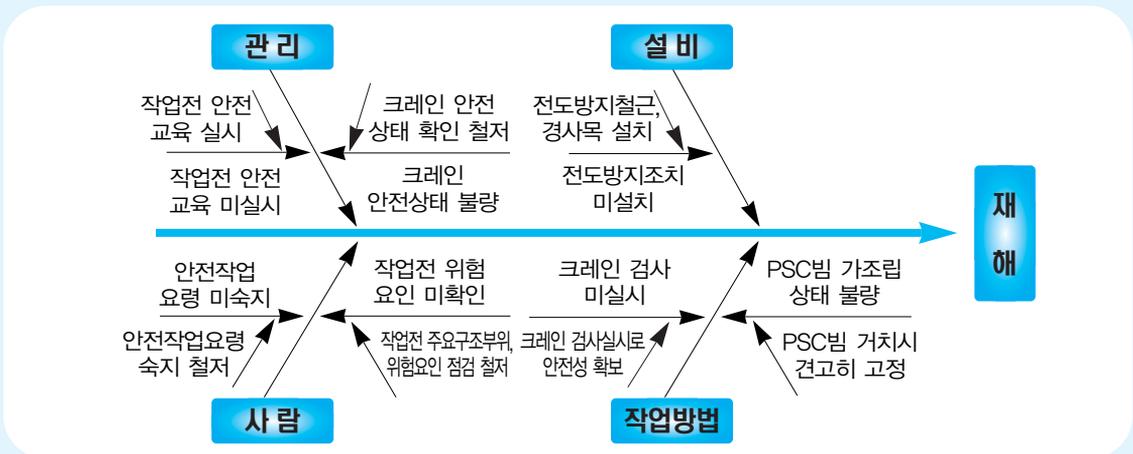
작업전에 작업방법, 안전작업요령, 주요 구조 부위 점검, 위험요인 등 철저한 확인후 작업 실시



4.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재해 요인도



철골도장 작업중 충전부에 페인트롤러



1. 재해발생 경위

2005년 4월 ○일 15:30분경 경남 김해시 소재 ○○기업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H형강 상부에 앉아 페인트 롤러를 이용하여 철골의 접합부 도장작업을 하던 중 페인트 롤러의 장대가 인근 공장의 전력공급용 수전설비(22,900V)의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특별고압 근접 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 나. 작업도구의 부적합
- 다. 특별고압 근접 작업요령 미숙지

3.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특별고압 근접작업시 안전조치후 작업

특별고압에 근접하여 작업시 접촉위험이 있을 때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개인보호구(안전장

재해사례연구
감전사고

갑, 안전모, 안전대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나. 특별고압 근접작업에 적합한 작업도구 사용

작업도구 제작·선정시 특별고압 근접작업을 고려하여 절연된 도구를 사용하거나 도전성이 없는 재질의 제품 사용

※ 알루미늄 재질의 페인트 롤러 장대 사용

다. 특별고압 활선근접작업시 사전 안전 조치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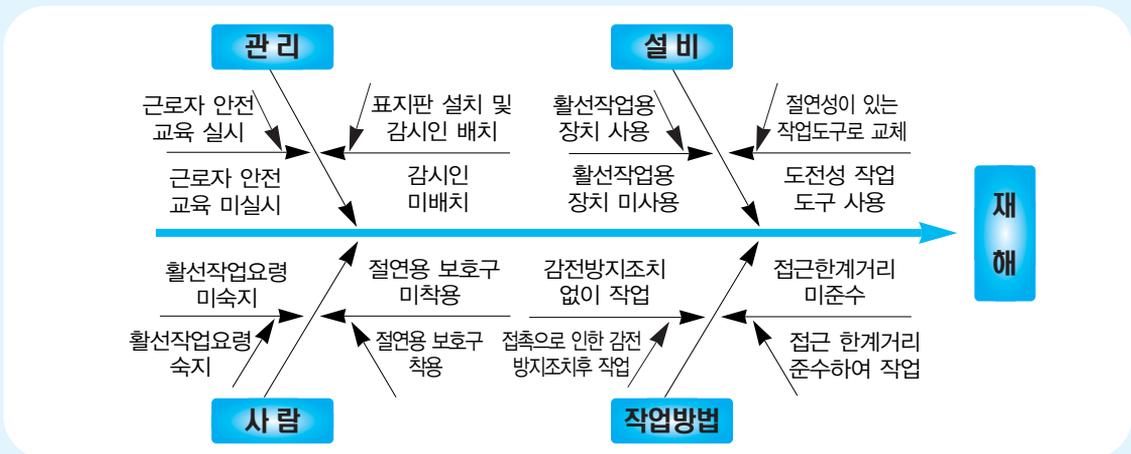
특별고압선로에 접근하여 작업을 실시할 경우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도록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4.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5. 재해 요인도



데크플레이트가 전위되면서 추락



1. 재해발생 경위

2005년 4월 ○일 11:00분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건설 근린생활시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양단의 지지가 불안정한 상태로 철골보 위에 임시 거치되어 있던 데크플레이트의 한쪽 끝 부분을 밟는 순간 편심에 의해 전위되면서 데크플레이트와 함께 추락하여(5.7m)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데크플레이트의 지지상태 불량
- 나. 안전방망 미설치
- 다.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3.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데크플레이트의 견고한 지지상태 유지

설계도서에 의거한 각종 부재의 규격을 준수토록 하고 데크플레이트 조립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방법

재해사례연구 추락사고

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조립(데크 조립과정 중에 양단이 충분히 지지되도록 거치상태 유지 하며 작업 진행)



나. 안전방망 설치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은 작업여건상 가설발판의 확보가 곤란하여 근로자의 이동 및 작업진행시 추락위험이 매우 높음으로 근로자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하부에 안전방망을 견고하게 설치

다.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골작업 및 이동시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

4.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5. 재해 요인도

